

농 어 촌 정 비 법 시 행 령 일 부 개 정 령 안

2021. 7.

농 립 축 산 식 품 부
(농업기반과)

1. 개정이유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목적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대해 관계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를 도입하고, 공공목적으로 목적외 사용시 사용료 감면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농어촌정비법」 개정안이 공포('21. 5.18)·시행('21.11.19, '22.5.19)될 예정임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목적외 사용허가에 따른 관계 주민 의견청취 절차 규정(안 제31조의2)

- 목적외 사용 관련, 본래의 목적 또는 사용에 방해되는지 여부에 대해 수혜 농업인 및 해당 농업생산기반시설 소재 시·군·구 지역 주민 의견청취 절차 공고
- 공고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공고일부터 30일 이내에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에게 의견 제출
-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는 관계 주민이 제출한 의견이 타당한 경우에는 반영
- 지역별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여건을 고려한 관계 주민의 의견청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 또는 정관으로 규정

나.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를 공공목적으로 목적외 사용시 사용료 감면 규정 신설(안 제32조 제2항)

- 공공목적으로 목적외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

3. 관련 예상쟁점

가. 관계부처 입장 : 해당없음

나. 관련 단체 등 입장

- (한국농어촌공사) 진출입로 등 유지관리에 영향이 적은 목적외 사용허가에 대한 관계 주민 의견 청취는 행정 소요 과다, 민원 발생 등을 고려하여 관계 주민 의견 청취 절차 생략 필요
- (한국낙시업중앙회) 관계 주민 의견 수렴 대상을 내수면어업계로 한정하고 관계 주민 의견 청취 인원수를 5명 이내로 축소 요구

다. 쟁점 대응방안

-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가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목적외 사용이 본래의 목적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관계 주민들의 의견 청취를 통해 타당성·객관성있는 사용허가토록 지도·감독 추진
- 지역별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여건을 고려하여 관계 주민의 의견청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어촌정비법 시행령」에 조례 또는 정관으로 규정

4. 참고사항

가. 추진일정

- 1) 제·개정안 확정 : '21 7월
- 2) 관계부처협의 : '21년 7월
- 3) 입법예고 : '21년 7~8월
- 4) 규제심사 : '21년 8월
- 5) 법제처 제출 : '21년 9월
- 6) 공포 : '21년 11월

나. 규제관련 검토사항 : 해당없음

다. 재정수반 여부 : 해당없음

라. 기 타

- 1) 개정안, 별첨
- 2)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 3) 법안담당

직 위	성 명	사무실 전화	HP	E-mail
식량정책관	박수진	044-201-1801	010-2318-1367	psjin73@korea.kr
농업기반과장	박재수	044-201-1851	010-2770-5589	jspark1@korea.kr
담당사무관	김영민	044-201-1852	010-3392-5646	ymk88@korea.kr
담당주무관	김형대	044-201-1854	010-8288-5046	kdh7924@korea.kr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1조의2(농업생산기반시설 등의 사용허가 관련 관계 주민의 의견 청

취) ①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는 법 제23조제2항 후단에 따라 수혜 지역 농업인 등 관계 주민의 의견을 들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14일 이상 게재하여 수혜 농업인 및 해당 농업생산기반시설 소재 시·군·구 주민이 열람할 수 있게 해야 한다.

1. 제31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목적 외 사용에 관한 사항

2. 의견 제출의 기간 및 방법

② 제1항에 따라 공고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공고일부터 30일 이내에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관계 주민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관계 주민의 의견 청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 또는 정관으로 정한다.

제32조제2항 중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료를 줄일”을 “법 제23조제3항 단서에 따라 그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1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2조제2항의 개정 규정은 2022년 5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31조의2(농업생산기반시설 등의 사용허가 관련 관계 주민의 의견 청취)</u> ①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는 법 제23조제2항 후단에 따라 관계 주민의 의견을 들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14일 이상 게재하여 수혜 농업인 및 해당 농업생산기반시설 소재 시·군·구 주민이 열람할 수 있게 해야 한다. 1. 제31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목적 외 사용에 관한 사항 2. 의견 제출의 기간 및 방법 ② 제1항에 따라 공고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공고일부터 30일 이내에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32조(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사용허가에 따른 사용
료의 징수) ① (생 략)

② 국가가 관리하는 농업생산기
반시설이나 용수를 철도·도로
등의 건설·관리나 그 밖에 공
공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그 사
용료를 줄일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나 한국농어촌
공사가 관리하는 농업생산기반
시설이나 용수를 목적 외로 사
용하는 경우의 사용료 징수의
범위는 제1항 및 제2항의 사용
료 징수 범위에 준하여 조례 또
는 정관으로 정한다.

③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관계 주민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
우에는 그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관계 주민의
의견 청취에 관하여 필요한 사
항은 조례 또는 정관으로 정한
다.

제32조(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사용허가에 따른 사용
료의 징수) ① (현행과 같음)

② -----

법 제23조제3항 단서에 따라 그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
제할----.

③ (현행과 같음)